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8. 17 선고 2022가단801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12,235,9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235,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8. 10. C와 혼인하였다가 2021. 10. 5. 협의이혼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당초 C의 소유였는데, C는 2021.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1. 7. 28. 접수 제7398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2022. 3. 18. 기준 원고에 대하여 12,235,930원 상당의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위 카드대금채권의 액수인 12,235,9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12,235,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후인 2022. 3. 18.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12,235,930원 상당의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1. 6. 30. 원고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2021. 7. 27. D기관에 C에 관하여 2021. 7. 26. 개인대출정보 사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접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무렵에도 C가 원고에 대하여 12,235,930원 상당의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카드대금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C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이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은 피고와 C의

협약이혼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와 C 사이의 재산분할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2011. 5. 24.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8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 중 5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나머지 매수대금 중 95,000,000원은 피고가 C와의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금원으로, 30,000,000원은 피고의 모(母)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으로 각 충당한 사실, ② 이후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가 2017. 11. 3.경 C의 위와 같은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129,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 11. 3. 접수 제76842호로 채권최고액 154,8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238,000,000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부분 외에는 모두 C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었던 238,000,000원에서 피고가 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29,000,000원을 공제한 109,000,000원은 당초 피고 내지 피고의 모(母)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위하여 제공한 125,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별지